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의 단축(회계연도 다음해 2.28 → 회계연도 12.31.) 및 결산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1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1일로 함.(안 제4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며”를 “매년 6월 11일에 집회하며”로 하고, “의회에 부쳐진”을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2호 중 “의회에 부쳐진”을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7월 5일</u>에 집회하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u>의회에 부쳐진</u>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에 집회하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의 <u>의회에 부쳐진</u>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 < 생략 ></p> <p>1. ----- <u>6월 11일</u>----- ----- ----- -----<u>의회의 회의에 부쳐진</u>-----.</p> <p>2. ----- ----- ----- -----<u>의회의 회의에 부쳐진</u>-----.</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